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2

2019. 3. 8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9년 2월 26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3월 8일
(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서동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다문화예비학교의 지정·운영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다문화 학생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과 우리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함양과 한국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에 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하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음

○ 충북의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학생 수를 보면 2016년 4025명(초 2,892명, 중 600명, 고 533명), 2017 4568명(초 3317명, 중 670명, 고 581명), 2018년 에는 5,047명(초 3,727명, 중719명, 고601명) 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

○ 한국어능력이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수행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,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됨

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으며, 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,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확대와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기초학습능력, 학교생활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
5. 토 론 요 지: "생 략"

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, 제13조, 제14조를 각각 제13조, 제14조, 제15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다문화예비학교 지정・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(다문화예비학교 지정 · 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 · 운영할 수 있다. 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 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제12조(생 략)	제13조(현행 제12조와 같음)
제13조(생 략)	제14조(현행 제13조와 같음)
제14조(생 략)	제15조(현행 제14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12.22.〉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〈신설 2012.2.1., 2015.12.1.〉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〈개정 2012.2.1.〉

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(아동·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.4.4., 2016.3.2.〉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,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1.4.4.〉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,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. 〈신설 2015.12.1.〉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, 금융정보 등의 제공, 조사·질문 등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〈신설 2015.12.1.〉

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12.1.〉

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1.4.4., 2015.12.1.〉

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개정 2015.12.1.〉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12.1.〉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3.22., 2015.12.1.〉

④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12.1.〉

[제목개정 2015.12.1.]

□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」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7.23.〉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